

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79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1999. 8
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사유

-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자발적인 표현기회 제공과 정보화능력 함양 및 청소년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- 가. 청소년문화의집에 기본 필수 시설로 정보자료실, 감상 및 관람실, 다목적홀, 회의 및 동아리방, 기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합하기 위한 시설설치등을 규정하였고(안 제3조)
- 나. 관리운영의 위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2년으로하고,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(안 제5조)
- 다.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세부운영규정 수립후 시장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으며(안 제6조)
- 라. 운영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수탁자가 계약 위반 및 목적에 위배시 위탁 취소등을 규정 하였습니다.(안 제10조)

조례 제정(안) : 별첨 1

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발취서 : 지방자치법 제135조,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(별첨2)
- 예산수반사항 : 315,000천원(국비 200,000천원 포함)
- 사전예고기간 : '99. 6. 23~7. 13 (21일간)
- 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- 기타참고사항 : 별첨 3
 - 공공청소년 생활권 수련시설 건립지침(경기 청소년 82520-116호)

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보호·육성하기 위하여 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(이하 “문화의집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문화의집은 안산시 선부동 1070-10번지 (차량등록사업소내)에 둔다.

제3조(시설) 문화의집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정보자료실
2. 감상 및 관람실
3. 다목적 홀
4. 창작 공방 및 연습실
5. 회의 및 동아리방
6. 기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4조(사업) 문화의집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문화의집 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·운영
3. 청소년의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
4.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관리운영의 위탁)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의집 관리 운영을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문화의집에는 1인이상의 사회복지 또는 사회교육 관련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유한 자를 직원으로 두어야 한다.

제6조(시설의 운영) ① 문화의집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문화의집 기본운영취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② 수탁자는 문화의집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.

제7조(운영비 지원) 시장은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,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도감독) ① 시장은 수탁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, 서류,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.

제10조(위탁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수탁을 받은 때
2.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
3. 문화의집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때
4. 이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

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·자료·장비 및 비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797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1999. 9. 13.

제안자 :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외 6인

1. 수정이유

- 일부 불합리한 조문내용을 수정하고 부적합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안 제5조(관리운영의 위탁) 제3항 조문중 “1인 이상의 사회복지 또는 사회교육 관련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유한자” 을 “1인 이상의 청소년 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한자”로 수정하고,
- 안 제7조(운영비 지원)중 “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” 를 “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로 수정함.

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(관리운영의 위탁)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문화의 집에는 1인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한 자를 직원으로 두어야 한다.

제7조(운영비 지원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운영비 지원)시장은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조 문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5조(관리운영의 위탁)①~② (생략)</p> <p><u>③문화의 집에는 1인이상의 사회복지 또는 사회교육 관련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유한 자를 직원으로 두어야 한다.</u></p> <p>제7조(운영비 지원) <u>시장은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조(관리운영의 위탁)①~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<u>③문화의 집에는 1인이상의 청소년 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한 자를 직원으로 두어야 한다.</u></p> <p>제7조(운영비 지원) <u>시장은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